
2012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신청요강

2012. 1.



주요사항 요약

구분	2011	2012	비고
지원예산	① 총예산 : 22,684백만원 - 신규 : 17,272백만원(737과제 내외) - 계속 : 5,412백만원(196과제 내외)	① 총예산: 22,990백만원 - 신규: 16,565백만원(872과제 내외) - 계속: 6,425백만원(214과제 내외)	
지원대상	①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 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① 「학술진흥법」 제6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신진교수 제외)	
지원규모 [연/과제당]	① 일반연구 : 연 25백만원 이내 ② 정액연구 : 연 7백만원	① 일반연구 : 연 20백만원 이내 ② 정액연구 : 연 7백만원 - 연구비 정산 생략	
지원기간	① 일반연구 : 1~3년 ② 정액연구 : 1년	① 좌동 ② 정액연구 : 1~3년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일반/정액연구 - 요건심사→전공심사(온라인+PM Review)→종합심사	① 좌동 ※ 네거티브 평가자 제도 실시	
연구결과물 제출	① 단독연구 : 연간 1편 이상	① 좌동	
추진일정	① 신규 과제(1회 공모) - 1월 공고/3~4월 심사/5월 지원 - 연구개시 : 5. 1.	① 좌동	



차 례

I. 사업목적 및 사업개요	
■ 사업목적	1
■ 지원근거	1
■ '12 중점 추진방향	1
■ 기대효과	2
■ 추진일정	2
II. 지원내용	
■ 예산	3
■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	3
■ 지원유형	3
■ 연구개시	4
III. 신청	
■ 신청자격	4
■ 신청기간 및 방법	5
■ 신청절차	6
■ 신청 및 참여제한	9
IV. 평가 및 선정	
■ 평가단계	1
■ 평가항목 및 배점	1
■ 평가절차 및 내용	1
■ 선정 및 협약체결	2
V. 연구비 관리	
■ 연구비 지급	3
■ 연구비 관리	3
VI. 연구과제 관리	
■ 평가유형 및 평가내용	4
■ 보고서 제출	5
■ 연구성과 관리	7
VII. 기타	
■ 간접비 지급	8
■ 학술지 평가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8
■ 기타 참고사항	8
[붙임1]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20
[붙임2] 평가항목 및 배점	21
[붙임3] 연구계획서 양식	23
[붙임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양식	27

1. 사업목적

- 연구자 생애주기의 중견급 개인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수연구자로의 역량 강화
- 연구의 다양성 확보 및 창의적 연구 촉진을 통한 학문의 균형적 발전 유도

2.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3조 및 제5조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3. '12 중점 추진방향

- 기본연구 내 단독연구의 중견연구자 대상 연구 분리지원
 - ※ '11년 226억원(신진연구 지원액 포함) → '12년 223억원 (신진연구 지원 제외)
- 연구비 관리 간소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연구자 만족도 제고
 - ※ 정액과제 연구비 정산 생략, 정액과제 다년과제 신설
- 지속적인 연구지원이 필요한 기초연구에 대한 안정적 지원
- 우수기초 성과물 발굴 및 홍보를 통한 성과 확산
- 네거티브 평가자 제도 확대 운영을 통한 쌍방향 평가제도 구축
 - 과제신청자의 소속기관이나 특정 연구주제에 대해 편향적인 시각을 지닌 평가자의 사전 배제를 통한 평가의 객관성 제고
 - 평가과정에 과제신청자의 요구 반영
 - 우수평가자 및 불성실 평가자 관리 정책 병행
- ※ 특수학문분야 등 분야별 특성에 따라 적용 범위 조정

- 창의·소외분야 연구장려를 위해 예산의 5% 이내에서 해당분야 선정가능
- 융합연구 장려를 위해 예산의 5% 이내에서 해당분야 선정가능
- 다년과제의 경우 연구기간에 대한 심사를 강화(연구주제 성격상 다년연구가 필요한 경우만 인정)

4. 기대효과

- 창의적 개인연구 심화를 통한 우수성과 창출로 창조적 지식생산 기반 구축
- 축적된 연구경험에 기반한 심층연구로 우수 연구력 증진 및 학술 발전 기여

5. 추진일정

일 정	추진 내용
2012. 1월	- 중견연구자지원사업 공고 및 안내
2012. 2월	- 신규과제 신청 접수 - 계속과제('10, '11년도 선정) 연차보고서 접수
2012. 3월	- 신규과제 선정평가 - 계속과제('10, '11년도 선정) 연차평가
2012. 4월	- 신규과제 선정평가 - 계속과제('10, '11년도 선정) 연차평가
2012. 5월	-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연구개시
2012. 6월	- 연구진행 관리
2012. 7월	- 연구진행 관리
2012. 8월	- 연구진행 관리
2012. 9월	- 연구진행 관리
2012. 10월	- 연구진행 관리
2012. 11월	- 연구진행 관리
2012. 12월	- 연구진행 관리

II

지원내용

1. 예산

(단위:과제/백만원)

구분	예산액	지원예정 과제수	비 고
신규과제	16,565	872	
계속과제	6,425	214	
합 계	22,990	1,086	

2.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

○ 지원분야 : 인문사회 분야(예술·체육학 포함)

※ 융합연구 장려를 위해 예산의 5% 이내에서 해당분야 우대

※ 융합연구과제 지원의 경우

- 융합연구과제란 “인문사회(복합.예술.체육 등 포함)와 이공계(자연공학.공학.의약학.농수해양) 분야 간의 융합연구과제”를 말함. 즉, 인문사회 학문분야에 기반을 둔 이공계 학문분야와의 융합연구과제를 의미함
- 인문사회 학문분야내의 대분류간 학제연구는 일반과제로 지원함

○ 지원대상 : 「학술진흥법」 제6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신진교수* 제외)

* 신청마감일 현재 최초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내인 국내대학 소속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교원 중)

3. 지원유형

지원유형	지원규모	지원기간	비고
일반	연 20백만원 이내 (간접비 별도 지급)	1~3년	
정책	7백만원 이내 (간접비 별도 지급)		

※ 편람, 사전편찬, 교재개발, 번역,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연구개시

○ 연구개시일 : 2012년 5월 1일

Ⅲ

신청

1. 신청자격

○ 「학술진흥법」 제6조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자로서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되고 다음과 같은 연구 실적이 있어야 함

- 단, 신진교수는 연구책임자로 신청할 수 없음

* 신진교수 : 신청마감일 현재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로 최초 임용된 지 5년 이내인 국내대학 소속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교원)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 소속 연구자이어야 함

※ 연구실적

2007년 1월 1일부터 온라인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국내외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SCIE급, A&HCI급·SSCI급, SCOPUS급) 학술지>, 등록 완료된 국제특허 또는 전문학술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등의 **연구 실적이 3편 이상이어야 함**

○ 단독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2편으로, 공동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1편으로 산정함

○ 단, 상기 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평가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온라인 신청 시에 입력하여야 함

※ HK교수의 경우 본 연구가 1) HK 연구소의 아젠다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과 2) HK 연구소의 아젠다 연구 수행과 평가(본 연구로 인한 연구결과물은 HK 연구소의 연구결과물로는 인정하지 않음)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HK 연구소장의 의견서(자유양식)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학술진흥법」 제6조

제6조(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또는 연구자 중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술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게 학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연구자 또는 대학등은 학술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자 또는 대학등으로부터 보고받은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추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고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협약의 체결 및 제3항에 따른 결과의 보고·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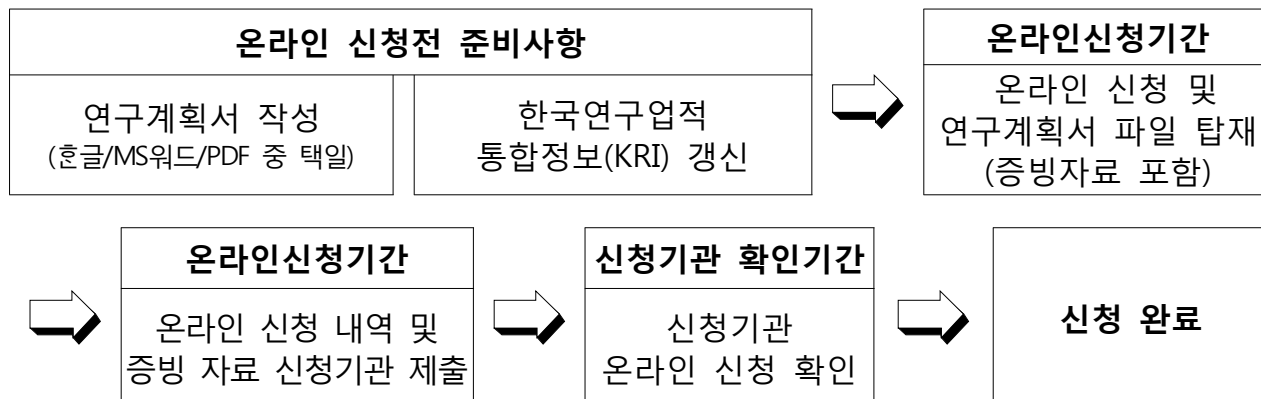
- 연구자 신청 : 2012. 2. 15(수), 14:00 ~ 2. 21(화), 18:00까지

- 기 관 확 인 : 2012. 2. 22(수), 14:00 ~ 2. 23(목), 18:00까지

※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소속기관)에서는 신진교수 여부(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교원으로 최초임용 5년 이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이 취소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3. 신청절차



가. 온라인 신청 전

- 1) 연구참여자는 재단 홈페이지 정보서비스→연구기반정보→「한국연구업적 통합정보(KRI)」에서 본인의 정보(연구업적 등)를 입력, 수정하여야 함 (신청 후 추가 등록한 정보는 반영되지 않음.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 취소 후 다시 신청하여야 함)
 ※ KRI 정보 갱신 시 소속, 직위, 이메일 주소 등 필수 입력사항을 미기재한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신청 전 사전 확인). 정보 공개 여부는 반드시 공개로 설정
- 2)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학술단체(학회 등) 회원 자격으로서 연구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함
- 3) 온라인 신청 시 연구계획서 파일을 동시에 탑재하여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 전에 「훈글」, 「MS워드」, 「PDF」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단의 소정 양식으로 미리 작성하여야 함 (PDF 파일 권장)
- 4) 시간강사는 사전에 신청기관을 정하여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와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신청 전·후 원활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5) '연구장비' 신청 시 연구비 중앙관리부서를 통해 동일 또는 동종 기기의 소속기관 보유 현황(구입년도, 기기명, 기기사양, 보유수량)을 파악하여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함

- 6) 신청과제의 평가분야 및 담당 학문단은 연구분야분류표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연구분야분류표 확인 : 재단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사업마당→연구분야분류표
→학술연구분야

※ 연구분야 및 평가관련 사항은 해당 학문단으로 문의

나. 온라인 신청

- 1) 연구자는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사항"을 입력하고, 작성한 "연구계획서" 파일을 탑재하여야 함(접수번호는 온라인 신청완료 후에만 볼 수 있음)

- 2) 연구책임자의 대표업적은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연구실적 중 3편을 선택하여야 함

- 국내외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SCIE급, A&HCI급·SSCI급, SCOPUS급) 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심사 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에서 입력하여야 함

- 3) '연구장비' 신청시 동일 또는 동종 기기의 소속기관 보유 현황(기기명, 기기사양, 구입년도, 보유수량) 및 사유를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에서 입력하여야 함

※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PC,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프린터 등의 구입 사양

- 4) 연구비 산출시 특정 세부항목이 전체 연구비의 70%를 초과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온라인 프로그램에서 입력해야 함

- 5) 학술단체를 통하여 연구비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기기 및 학술문헌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부득이 신청하여야 할 경우 활용계획(비치장소 포함)을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에서 입력해야 함

- 6)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입력한 신청내용과 계획서 파일의 교체가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 마감일 후에는 교체·수정이 불가능함

- 교체 및 수정한 후에는 신청완료 버튼을 반드시 다시 클릭해야함
(클릭하지 않았을 경우는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

- 7) 온라인 신청 및 연구계획서 파일을 탑재하고 접수번호를 부여 받았을 경우에 신청이 완료된 것이며, 접수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과제번호는 신청 마감 이후에 일괄적으로 부여됨(접수번호와 과제번호는 다름)

- 연구계획서 파일을 탑재하기 전 『인쇄-미리보기』에서 1쪽씩만 보이는지 확인한 후 탑재함(『인쇄-인쇄방식』을 ‘자동인쇄’로 바꾼 후 저장)

- 8) 융합연구과제로 신청할 연구자는 연구분야분류표의 대분류 기준 중 2개를 반드시 심사희망분야 1, 2순위로 선택해야 함

※ 연구분야분류표 대분류 학문분야 기준 :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 예술체육, 복합학

- 9)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탑재함(연구계획서와 별도 분리, 양식은 붙임 참조)

다. 온라인 신청 후

1) 연구책임자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입력내용(계획서 및 관련자료 일체) 1부를 출력하여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에 제출

2)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산학협력단 등)

-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연구비 중앙관리부서는 연구책임자로부터 신청 입력내용 1부를 제출받고 기한 내에 신청기관 확인을 완료해야하며, 확인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되지 않음

4. 신청 및 참여제한

□ 신청제한에 관한 사항

- “상반기 공모 사업” 내에서는 1과제만 신청 가능
 - ※ 학문후속세대(박사후국내연수, 학술연구교수), 신진연구자지원, 중견연구자지원, 저술출판지원, 대학연구인력국제교류지원 중 1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학술진흥법」 제19조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로 인하여 현재 제재 중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대학·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에 소속된 자는 학술단체(학회 등) 회원 자격으로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7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 ※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본 사업에 인건비를 신청할 수 없음. 단, 연구기간만료일이 2012. 12. 31. 이전인 경우는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나 기 수행 중인 과제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인건비 지급을 중지하고 신규지원 연구비에서 지원

□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3과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하며, 인건비는 중복 수혜할 수 없음

* 상기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관련 1인 3과제 참여기준의 범위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과제 관리규칙」과 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적용 사업의 지원과제를 대상으로 함

- 단,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기간 만료일이 2012. 12. 31 이전인 과제는 참여제한 과제수에 포함하지 않음

* 연구기간 만료일이 2013. 1. 1. 이후인 과제라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책 개발 연구과제(정책주제형 대학중점연구소과제 포함),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 개인연구(우수논문지원, 우수학자지원사업), 소규모연구회지원사업, 인문주간 및 강좌 지원의 과제(시민인문강좌, 상설인문강좌), 학제간 융합연구지원(산학협력형, 융합연구총괄센터), 사회과학연구지원(SSK네트워킹지원, 사회과학 성과·홍보확산지원, 사회과학중장기 Agenda 개발지원) 등은 참여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

-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의 박사후 국외연수 지원사업 수혜자는 연구기간(지원기간)이 본 사업과 중복되는 자는 참여할 수 없음

* **참여제한은 연구비 신청 시에도 적용될 수 있음.** 즉, 신청한 과제(연구자)가 선정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참여제한에 저촉되면 신청 불가

* 연구비 지급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포함된 연구과제는 **연구비 신청 이후에라도 조치사항이 발생 혹은 확인되면 최종선정에서 제외**

1. 평가단계

단계별	평가구분		평가내용	비 고
1단계	요건심사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재단
2단계	전공 평가	온라인평가	연구역량 및 연구계획서 평가	전공평가단
		PM Review	온라인 평가 결과 검토	PM
3단계	종합평가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종합평가단

※ 융합연구과제의 전공평가 : 패널평가

2.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2] 참조

3. 평가절차 및 내용

가. 제 1 단계 : 요건심사

- 심사방법 :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심사
- 심사내용 :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나. 제 2 단계 : 전공평가

<일반과제>

- 평가방법: 온라인평가 + PM Review
 - 온라인평가 : 온라인으로 전문가에 의한 개별 평가
 - PM Review : 해당 학문분야 PM이 전공평가 결과를 검토하는 제도(평가자 간 점수 격차에 대한 보완 및 검증 등)
- 평가내용 : 연구역량 및 연구계획서 우수성 등

○ 네거티브 평가자 제도 적용

- 신청자가 사전에 평가자 기피 대상 1명을 선택 가능토록 하여 해당 과제 평가자 구성 시 배제

○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2] 참조

<융합과제>

○ 평가방법: 패널평가

- 패널평가 : 연구계획 집단 검토 및 토의에 따른 평가
- 평가자구성 : 심사요청분야 1순위와 2순위를 고려하여 구성

○ 평가내용 : 연구역량 및 연구계획서 우수성, 융합연구의 적합성 등

○ 네거티브 평가자 제도 적용

- 신청자가 사전에 평가자 기피 대상 1명을 선택 가능토록 하여 해당 과제 평가자 구성 시 배제

○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2] 참조

다. 제 3 단계 : 종합평가

○ 평가주관 : 종합평가단

○ 평가내용

-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 평가결과 최종 점수 70점 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

4. 선정 및 협약체결

○ 예비선정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예비선정과제를 공개하여 타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 등을 방지

○ 최종선정 : 예비선정 기간 중 중복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선정

○ 협약체결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주관연구기관(장), 연구자 3자간 연구비 협약 체결

1. 연구비 지급

☐ 지급방법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장(주관연구기관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지급
 - ※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은 과제별 협약 체결 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함
 - ※ 다년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는 연차평가 후 지원 결정된 연구비 지급

2. 연구비 관리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주관연구기관)이 중앙관리
- 정액과제는 연구비 정산을 생략함

1. 평가유형 및 평가내용

□ 연차평가

- 평가시기 : 연차보고서 접수 후 차년도 연구개시 전
- 평가방법

구분	평가구분	평가내용	비고
1단계	전공평가	연차별 당초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 점검	PM (필요시외부전문가)
2단계	종합평가	1단계 평가 결과 검토 및 지원여부 최종 결정	종합평가단

※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2] 참조

○ 평가점수 및 조치

점수	등급	조치
80점 이상	Pass	계속지원
70점 이상 ~ 80점 미만	Yellow	주의 후 계속 지원
70점 미만	Fail	지원중단

※ 주의 2회 누적과제는 자동 탈락(지원중단)

○ 평가결과 활용 : 차년도 혹은 다음단계 지원여부 및 연구비 결정

※ 지원중단 결정시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연구 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2. 보고서 제출

가. 연차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연차별 연구종료 2개월 전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연차보고서(소정양식 온라인 탑재)

나.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출자료
 - 연구결과보고서(자유형식, 파일 탑재)
 - 연구요약문(국·영문)
 - ※ 연구요약문은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
 -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 연구비 집행정산 내역서 :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에서 입력
 - 연구성과 및 연구성과물 등의 정보입력

* 연구수행과정에서 획득한 통계,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등 각종 자료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한국연구재단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 공개 및 활용

- 제출된 연구결과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를 통해 PDF 형태로 공개 가능

*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연구부정행위 사례(예: 허위 및 표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은 소정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제재조치 결과 및 명단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음

다.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 제출시기 :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연구결과물은 국내외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SCIE급, A&HCI급·SSCI급, SCOPUS급) 학술지>에 아래와 같이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구분	1년	2년	3년	비고
단독연구	해당년수 × 1편 이상			저서 혹은 역서의 경우 단독 저작은 2편, 공동 저작은 1편으로 인정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하지 않음

- 사사표기

연구결과발표 시,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국문표기 시	이 논문 또는 저서는 ○○○○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선정연도-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선정연도-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 연구결과발표물 사사표기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이 아닌 타기관 일부 지원 병기표기를 허용함

라. 연구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미제출시 제재

- 연구결과 및 연구결과물 관련 의무 미이행 과제는 「학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처리
 - ※ 세부 제재 조치기준은 향후 「학술진흥법 시행령」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개정 후 별도 공지

3. 연구성과 관리

- 연구자는 연구진행부터 연구결과물 제출 후에라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세계인명사전 등재 사실, 각종 언론보도 내용, 인력양성 실적 등) 및 연구성과물(논문, 저서, 각종 보고서, 특허, 기술발명, 원자료, 중간산출물)을 탑재하여야 하며, 한국연구재단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성과물을 송부하여야 함

* 연구성과물은 연구성과 중 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을 포함

- 원자료는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참고한 일체의 자료(단, 저작권 미해결자료 및 타 기관 기 구축 자료는 제출 불가)
- 중간산출물은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일체의 자료(예: 사진자료,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통계자료 등)

- 한국연구재단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제34조에 따라 연구성과물의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여야 함
 - 국회도서관, KERIS, NTIS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용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KRM)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원문, 음성, 동영상, 이미지 등) 서비스 제공 등

1. 간접비 지급

- 신규 과제의 경우 협약시점 적용고시율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며, 계속 과제의 경우 선정년도 혹은 단계평가의 기준년도 적용 고시율을 적용

2. 학술지 평가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 '14.12.31. 학술지 평가제도 폐지('11.12.7. 발표)에 따라 단계적인 조치를 위해 사업별로 신청 자격 및 결과물 제출에 사용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 기준을 '13년부터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학술지”로 변경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고

3. 기타 참고사항

- 신청시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입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신청자(연구책임자)는 평가결과 발표 후 일정기간 해당 과제의 평가결과와 관련된 평가 의견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단, 타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및 평가내용 등 제반 사항은 비공개 대상임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의거,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아연구에 해당되는 연구과제의 경우, 해당 연구기관은 배아 연구기관으로의 등록과 해당 연구계획에 대한 승인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얻어야 함에 따라,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아연구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문 의 처

□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 사업 및 신청요강 관련 문의

- 인문사회연구지원팀 : 042-869-6204, 6134, 6130, 6306, 6307, 6309

○ 사업총괄기획 및 규정 관련 문의

- 인문사회연구총괄기획팀 : 042-869-6103, 6102

○ 전공평가 관련 문의

- 어문학분야 : 042-869-6391 ~ 3

- 역사철학분야 : 042-869-6245 ~ 6

- 법정상경분야 : 042-869-6301 ~ 2

- 사회과학분야 : 042-869-6083 ~ 4

- 문화융복합분야 : 042-869-6136 ~ 7 (예술체육·융복합분야)

○ 전산 관련 문의(온라인신청, 연구업적통합정보, 전산장애)

- 정보팀 Help Desk : 1544-6118

붙임1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 기준
인건비	인건비	1. 연구보조원 : 연구에 참여하는 - (전문)학사과정, - 석사과정, -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 * 개인별 총액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7조 제2항에 정한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전문)학사과정생 및 학사급 연구원: 월 50만원 이내 - 석사과정생 및 석사급 연구원: 월 100만원이내 - 박사과정생: 월 150만원이내 * 연구보조원 인건비 계상은 참여기간에 따라 계상할 수 있음. * 다만, 학사급 및 석사급 연구원은 연구참여가 가능한 국내기관에 소속이 있어야 하며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연구책임자 책임하에 연구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며 졸업 등의 사유로 학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당초 참여자격을 연구종료 시까지 인정함. 다만,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참여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 "별표2"를 준용할 수 있음
		2 박사급연구원 * 교육과학기술부, 전문기관 및 타 소속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제외	- 박사급연구원(월 170만원이내 / 1인당)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1. 각종 재료 및 시약, 소모성 부품 등의 구입 및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 2. 해당 연구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적용되어야 함 -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용에 한해 인정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현지교통비 등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3.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국내외 정보 D/B 네트워크사용료, (해외)기술정보수집비·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윤문교열비, 번역감수,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회의비, 특허정보조사비 등 4. 현지조사시 설문 및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필요한 활동 경비 5.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논문게재료 등 연구성과의 발표 및 홍보에 필요한 실 소요경비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실제 소요액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 - 여비는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하고,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 국외여비는 자료수집 등 필요 최소한 인정 - 회의비 및 회의제잡비(다과비 등)는 실제 소요액으로 반드시 카드사용 - 회의일시, 장소, 목적 및 참석자 등이 기록된 회의록 구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의 경우, 도서명, 금액이 포함된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 현지조사활동비는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한하여 계상 가능 - 논문게재료 등 연구결과, 성과의 발표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는 연구종료 후 2년 이내에 집행가능하며, 미집행 금액은 반납하여야 함
	연구 수당	○ 연구책임자 및 일반공동연구원의 연구활동에 관련되는 경비 * 인건비를 계상한 박사급연구원은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없음	- 연구책임자, 일반공동연구원 : 1인 연480만원이내 *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계좌이체

☞ 인건비의 경우,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참여인력계좌로 직접 이체하여야 하고, 참여인력의 통장을 타인이 관리할 수 없음

1. 신규과제 평가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고
독창성 (40)	연구주제 및 방법의 독창성 (40)	■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주제인가 ■ 새로운 지식 또는 이해를 창출/증진시키는가 ■ 독창적인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는가	
수월성 (40)	연구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및 타당성 (20)	■ 연구규모와 관련하여 연구내용 및 범위가 적절한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함하는가 ■ 타당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적합한 접근방법인가	
	실행계획의 구체성 (20)	■ 연구 추진과정이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 중요 선행연구가 정확하고 치밀하게 분석되었는가 ■ 자료의 수집·분석·해석 방법과 도구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 연구규모(연구비 및 연구기간)가 적절한가 ■ 제시된 연구목표(연구결과 등)의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연구 역량 (10)	학문적 전문성 및 관련 업적 (10)	■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업적이 축적되어있는가 (질적 수준 포함)	
기대 효과 (10)	학문발전 기여도 및 학문적 파급효과(10)	■ 많은 후속 연구를 파생할 수 있는가 ■ 각 학문분야 연구활성화에 기여하는가 ■ 연구 결과가 교육에 환류될 가능성이 높은가	

※ 단, 융합연구과제는 위 평가항목 배점을 80% 환산한 점수에, 아래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별도 구성된 패널에서 평가함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고
융합연구의 적합성(20)	융합연구 주제의 적합성(10)	■ 연구과제가 융합연구로서 적합한 내용인가	
	융합연구의 수행역량(10)	■ 융합연구를 추진할 역량과 경험이 적절한가?	

2. 연차평가

평가항목	측정지표	비고
기수행 연구 실적 (80)	연구수행의 당초 목표대비 진도 실적(40)	
	연구수행결과 관련 실적(40)	
향후 연구계획 및 내용 (20)	기수행 연구내용과의 연관성(5)	
	차년도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10)	
	최종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5)	

지원유형		연구기간	선택
일반연구	정책연구	1년 과제	
		2년 과제	
		3년 과제	

연구 계획서

<2012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연구규모	연구기간	년	신청 연구비	1차년도	천원
				2차년도	천원
				3차년도	천원
				계	천원
연구과제명	국 문	온라인신청시 등록한 과제명과 동일하여야 함			
	영 문	온라인신청시 등록한 과제명과 동일하여야 함			

<목차>

I. 연구계획	○
1. 연구의 목적	○
2. 연구방법 및 내용	○
3. 결과 활용방안	○
4. 기타사항	○
5. 참고문헌	○
II. 연구추진계획	○
1. 과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
2. 연구수행일정	○
III. 대표업적	○

I . 연구계획

아래 사항은 참고하신 후 반드시 삭제하시고 작성하십시오.

- ※ 연구계획은 “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조하시어 연구의 목적, 방법 및 내용, 학문발전 공헌도, 결과 활용방안 등을 자유형식으로 기술함
 (“목차”를 반드시 포함함-[총괄 앞장]과 [I.연구계획] 사이에 “목차” 배치)
- ※ 다년과제 또는 해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의 필요성을 추가 기술함
- ※ **연구계획서**(연구계획, 참고문헌 목록, 연구추진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포함) 파일의 크기는 10Mb (또는 A4 용지 15매 내외)이내를 원칙으로 함. 단, 참고문헌 목록은 15매에 포함되지 않음
-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반드시 쪽수(page)를 기재**
- ※ 연구과제의 평가는 **무기명심사(Blind Review)**로 진행됨.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연구참여자 및 연구보조원 등을 알아 볼 수 있는 **소속,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않아야 함**.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단, 참고문헌 중에서 본인이 저자인 문헌의 경우 본인이름을 삭제할 필요는 없음

1. 연구의 목적

(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의 독창성, 선행연구와의 비교 등 포함)

(※ 융합연구과제의 경우 융합연구의 필요성 및 적합성에 대한 기술 포함)

2. 연구방법 및 내용

(다년과제는 연차별 연구계획을 각각 기술)

3. 결과 활용방안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인력양성 방안,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 등 기술)

4. 기타사항

(다년과제 또는 해외출장의 필요성 및 연구비 집행계획 등 기타 연구내용 계획에 필요한 사항 기술)

5. 참고문헌

Ⅱ. 연구추진계획

1. 과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 등을 기술)

2. 연구수행일정

(연차별 과제목표와 추진기간별로 연구수행내용 등을 기술)

※ 다년과제의 경우 2차, 3차년도 일정도 작성 (1년과제는 1차년도만 작성)

< 예시 >

1차년도 과제목표		
기 간 (추진년월)	내 용	비 고
2012. 5		
6		
...		
...		
~2013. 4		

2차년도 과제목표		
기 간 (추진년월)	내 용	비 고
2013. 5		
6		
...		
...		
~2014. 4		

3차년도 과제목표		
기 간 (추진년월)	내 용	비 고
2014. 5		
6		
...		
...		
~2015. 4		

※ 연구개시 시기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III. 대표업적

연구업적 요약문	
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연구업적 제목	
업적 구분	저서() 역서() 학술지() 외국특허()
연구 참여자수	1명 () 2명 () 3명 () 4명 () 5명이상 ()
■ 초록(abstract) 또는 요약문 (특허의 경우 출원일, 출원국가 및 내용 등을 기재)	

※ 온라인 신청 시 선택한 연구업적 3편에 대하여 각각 작성함

개 인 정보 제 공 및 활 용 동 의 서

본인은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하는 연구지원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한국연구재단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연구계획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 연구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단의 연구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또한, 본인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2년 월 일

☐ 본 인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_____
 자택전화 _____ 휴대전화 _____
 e-mail _____
 직 장 _____ 직 위 _____
 직장전화 _____ 팩 스 _____

☐ 참여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 명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한국연구재단이사장 귀하